

# 군인 청원에 관한 연구

정재극\*

## 요약

군인은 청원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 제기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로 청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론을 앞세워 청원을 해결하려 한다면 사기저하와 군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군의 청원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가로 편제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을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사들에게 외부청원이 쉽게 해결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청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A Study on petition for army soldiers

JaeKeak Jung\*

## ABSTRACT

Soldiers can petition. You can file an action within the military to take action, but you are not satisfied and file a petition outside. However, if you try to resolve the petition with public opinion in mind, there are also side effects of defrauding and losing trust in the military. Military petitions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on legal grounds and experts, and results must be transparent and fair. I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petitions so that external petitions are not easily used as a pathway for smartphones to use in the territory.

**Key words : Military, Soldier, Petition, Military officers, Power of command**

접수일(2020년 08월 12일), 수정일(2020년 9월 05일),  
게재확정일(2020년 9월 27일)

\*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교수 / 학과장

## 1. 서론

징병제를 택한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법률적 유보를 통하여 군대를 운영하고 있다. 군대는 군인과 무기 그리고 지휘권을 바탕으로 전시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다. 연간 태어나는 인구가 2020년에 이르러 30만명대로 떨어지고 부터는 군도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가정에서 한 명뿐인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들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외부로 불거져 사기가 떨어지고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휘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의 절벽, 스마트기기의 발전은 우리나라 군대가 새로운 강군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중 군내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는 청원이라는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군내 내에서 청원의 종류에는 소원수리, 내부공익신고센터 등이 있는데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하여 군내부 문제를 외부 청원기관을 통하거나 여론과 언론을 통하여 해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휘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간부들도 훈련의 강도와 병영생활지도를 병사의 눈높이에서 진행하다 보니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 청원을 하는 구조까지 더해져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휘권에 대한 위협은 군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군기위반행위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의지를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청원에 대해 군 장병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또는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휘권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공군에서 지휘권을 위협하는 청원이 발생하였다. 병사가 부사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고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1]. 또한 교육훈련을 엄하게 시킨 군단장이 좌천 되는

등 싸워서 이겨야 할 군대가 힘들면 청원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군인은 침해된 개인 기본권익에 대한 구제 요구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원수리와 내부공익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같은 방식은 자체내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가 제한되고 있다. 부대 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지휘관이나 선임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군대 내 ‘소원 수리함’과 같은 고발 창구 통로가 돼버렸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2019년 6월 현역증장의 보직해임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국민과 정치권에서 이슈화 된 적이 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만이 살길이다’ 라는 장군의 지휘의도에 젊은 장병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훈련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장군의 지휘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청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을 방어하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던 말인가. 말로 싸워 이기는 군대, 게임상으로 이기는 군인은 가상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은 강한 훈련을 한 군인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 육군본부 감찰결과 현역 증장은 지휘 명령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만다. 물론 강한 훈련도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중단되었[2].

육군 여단장이 일병에게 태도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켰는데 이를 외부청원에 제기해 부모까지 거론하며 인격모독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역시 육군본부가 감찰 중인데,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 청와대를 의식해 육군본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장병 사이에 퍼져 있다고 한다. 이를 놓고 ‘군 기강 해이’와 ‘군의 잘못된 관행이 빚은 불신’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이러한 현실에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휘관들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3].

군에서는 병영생활 도움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병사들 스스로가 병영생활동안은 어떠한 어려움도 군대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4] 현재 병사들이 외부청원을 하게 되면 지휘관들은 지휘권 행사를 할 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잘못이 없더라도 외부청원 대상 지휘관은 다양한 감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군은 전쟁 발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지 못한다. 병사들 애로사항 못지않게 지휘관의 사기도 높힐 수 있도록 청원의 접수와 처리가 발전되어야 할 시기이다.

2020년, 군대에서 병사들 상호 호칭이 없다. 같은 부대원이 아니면 병장이 일병에게 병사님, 아저씨, 저기요 등으로 불린다고 한다. 군기가 빠져 너무 한다고 하지만 군 간부들 중에서 전사만 되면 즉결처분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의 군대도 아니고 현재는 건강 달았다고 자기 부하를 현 지 즉결처분 하는 시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평시부터 불만족, 지휘권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하고 목표를 위해 최선의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대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휘관에게는 평소 군 기강과 소통, 훈련을 강하게 하여 유사시 죽음을 감수하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본 논문은 군인의 청원에 대해 알아보고 내부와 외부의 청원 제기시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군인의 청원

군인의 청원은 소원수리와 내부공익신고센터가 있으나 고충처리 부서 설치여부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여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2.1. 소원수리

소원수리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개

인 기본권익에 대한 구제 요구 및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인 기본권익 보호와 부대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소원수리에는 지휘관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일반 소원수리, 감찰계통에서 조사, 검열, 예방활동 등 특정업무, 지휘관 하명시 실시하는 특별 소원수리, 소원 제기자가 지휘/감찰계통으로 제기하는 수시 소원수리 등이 있다.

#### 2.1.1 소원의 제기

장병, 군무원, 예비군 및 고용인은 감찰관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출두, 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감찰관은 필요시에 한하여 소원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원제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각 개인의 소원제기를 방해 할 수 없고 소원인을 문책할 수 없지만 허위 소원 제기자는 의법 문책한다. 소원수리에 대한 비밀보장과 제도의 이용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소원 제기후 10명중 1명 정도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였고 때문이다.

#### 2.1.2 접수절차

장병, 군무원, 예비군 및 고용원은 지휘계통이나 감찰계통으로 가용한 방법으로 소원을 제기 한다. 지휘계통으로 실시하는 일반 소원수리는 대대급 이상 부대 지휘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중대급 이하부대는 지휘관(자)이 수시로 간담회와 개인 면담을 통해 실시하여 개인과 부대의 소원을 조지한다.

소원접수는 일반적으로 대상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면담 또는 서신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원접수는 소원수리관이 대상부대 일보와 인원현황을 휴대하고 소원수리 장소를 방문하여 부대원 전원에게 공정한 소원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소원수리 작성 양식을 준비하거나 백지를 사용하여 접수한다. 면담에 의한 소원수리는 자유로운 의사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소원내용은 작성양식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양식 없이 백지에 본인이 기록하도록 하며 필요시 소원수리관이 소원제기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서신에 의한 소원수리는 우편 또는 전화 등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 해도 면담에 의한 소원수

리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출두 또는 추가 서신을 요구하며 명확한 내용을 파악 후 조치한다.

### 2.1.3 처리절차

소원은 접수한 부대 및 기관에서 해당 지휘관에게 보고 후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소원내용에 대해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 조사 또는 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원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소원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정당한 소원에 대한 확인 및 조치는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일 초과시는 소원 제기자에게 처리 지연 및 예상 조치일자를 중간 통보한다. 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찰, 군사경찰, 법무 등에 의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소원수리 결과는 특정인별 / 부대별 통계분석을 지양하고 지휘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 취급한다. 소원수리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할 상·하급 제대에 따라 사안별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되, 해부대의 중간계통의 상급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일체 개봉, 열람할 수 없다. 해부대에서 조치할 수 없는 소원내용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조치를 건의하며 무기명으로 제기된 소원은 현저한 비위사실과 군 발전에 저해되는 사안이 아니면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2.1.4 보고 및 조치

소원수리 결과보고서는 소원 관련인에게 부대임무 및 특수성, 오해가능 부분은 제거하고 내용별 조치방안을 제시한다. 제기된 소원 중 주요사안이나 부대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실 규명차원에서 조사후 처리한다. 조치요령 중 장려사항은 관계부대에 전파, 시정사항은 해부대 지휘관 조치, 조사사항은 조사할 가치가 있을 경우 하명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 검토사항은 관계참모부에 의뢰, 건의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조 상급부대에 건의 조치, 참고사항은 부대지휘참고, 개인통고시 완전무결하게 조치 후 결과 통보, 군에 불리한 사항은 소원인에게 통고를 지양한다.

소원인은 소원수리결과가 공정하지 않거나 법규에 준하여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시 상급지휘관 또는

감찰실 앞으로 소원처리의 부당함을 직접 상신하여 소원에 대한 재확인 및 적정성에 대한 심리 조치를 재 소원할 수 있다.

## 2.2. 내부공익신고센터

육군에 복무중인 전 장병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 불편 / 불리한 상황,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 곤란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계통으로 건의하거나 미해결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활용한다.

### 2.2.1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지휘계통에 의거 고충상담 및 건의를 실시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았을 때 각급 부대 감찰실 내부공익신고센터로 청구서를 제출한다.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급제대 감찰부 또는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처리한다. 비위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담당관의 현지 출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다. 익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된 사항은 참고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중인 자는 조사를 보류한다. 모함 / 무고성 투서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고성 투고는 색출하여 의법 처리한다.

### 2.2.2 처리 방법

현지 확인방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며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신고를 접수한 부대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하부대 위임하거나 상급부대 조사의뢰도 가능하다. 조사결과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징계사안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하며 경미한 사안은 공과사실에 기록한다. 무혐의는 불문 처리한다.

## 2.3. 고충심사 청구

### 2.3.1 고충상담 및 건의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고충상담 및 건의를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표 1> 고충상담 건의절차

구분	1차	2차	3차
장교	지휘관 및 참모	연대장	사단장
부사관	지휘관 및 참모	대대장	연대장
병	분대장 및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고충상담 및 건의는 신분별로 규정된 지휘계통을 통하여 실시하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제기할 때에는 해 제대 지휘계통으로 다시 이첩하여 고충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충상담 및 건의를 하였음에도 고충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3.2 고충심사 청구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군인, 군무원등 군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육군본부 내부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받은 감찰실에는 해당 주관부서로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도록 이첩한다. 이첩받은 주관부서는 고충을 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의 청구는 소속제대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외기관에 진정시에는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한다.

### 2.3.3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고충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 및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 및 운영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로 구성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둔다.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

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설치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심사를 청구한 간부에게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는 간부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3. 외부청원

청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청원 할 수 있다.

### 3.1. 국민신문고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이며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정책 토론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민원으로 접수되어 관련부서로 이첩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군 관련 민원은 국방부에서 각 군으로, 각 군은 해당 관련 부서로 이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 조사과에서 사안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육본에서 직접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기도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의 특성은 민원과 섞여 있어 고충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과 통화하여 정확히 조치해 달라고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역복무자임을 알게 되면 지휘계통을 통하여 조치 받지 않음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 자칫 청원인이 불리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조치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하는 것이기에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 3.2. 국민청원

청와대가 직접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답하겠다고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도 되지만 찬반으로 엇갈려 국론 분열도 우려되는 단점도 안고 있다. 국민청원은 공감과 이견추구의 성향으로 군 관련 문제를 외부에 공론화할 경우 군인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5] 군 관

런 문제를 쟁점화 한다면 적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크고 내부적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분열된 군인들의 사기는 결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2020년7월 현재 ‘군인’ 단어에 대한 국민청원 검색 결과 8천 건이 넘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역 부사관이 특정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군 자체 해결로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국민청원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군대 청원 시스템과 장병들의 의식간에 상당한 괴리감과 좁혀지지 않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6].

## 4. 군인청원 불만족과 발전방향

군인의 청원은 지휘권과 충돌한다.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알려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보안과 사기저하 등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복무에 어긋난다고 한다. 그러나 군인복무규율은 법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징계를 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외부로 표출할 수 밖에 없는 군 내부의 청원은 여러 가지 불만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7]

### 4.1 소원수리 처리의 불만족

소원수리의 구분에는 지휘권 범위내의 일반소원수리와 감찰계통의 특별소원수리, 소원제기자가 수시로 제기할 수 있는 수시 소원수리로 구분한다. 일반과 수시 소원수리는 병영내에서 가정먼저 제기할 수 있고 조치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부분에서는 유리하지만 해당 부대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기 보다는 해당 지휘권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어 중대장에게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중대장은 가혹 행위자를 확인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후의 결과에 대해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대장 재량 범위내에서 정신교육정도로 끝내게 되면 소원을 제기한 병사는 불만족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대한 불복 조치로 소원인은 소원수리결과가 공정하지 않거나 법규에 준하여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시

상급지휘관, 감찰실로 소원처리의 부당함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매일 일상을 같이해야 할 부대원들이기에 대부분 불만족 상태에서 종료된다.

소원수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비밀보장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병영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지휘라인을 고려하여 소원수리를 수시로 받는다면 불만족하고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해결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로 남기 때문에 소원수리를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 4.2 내부공익신고센터 처리의 불만족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육군본부 감찰실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육군의 전장병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사안에 따라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하 부대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 담당업무는 소수인원이 하고 있어 적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센터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법무 또는 군사경찰 전담인력으로 감찰인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제보자의 내용이 법리적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으로 처리 하게 되면 제기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다.[8] 향후 감찰부서에 법률, 수사 전문가로 편성된 군무원으로 편성하여 운영된다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 4.3 국민신문고를 통한 처리의 은밀성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원은 청원인이 대통령실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제기하던 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입력되고 국방부에서 각군 본부로 분류되어 처리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국방부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각군 본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원은 민원과 성격이 유사하여 처리하는데 있어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청원 내용이 육군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과에서 조사관이 직접 조사할 경우 군은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조치결과를 공문서로 보내주

게 되며 처리의 공정성이 다소 높다고 하겠다.

#### 4.4 국민청원 공론화의 부적절성

국민청원 제기시 언론과 여론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인데 국민청원으로 군 문제를 외부로 끌고 나와 여론화 한다는 것은 결코 이롭지 못하다. 장군들도 병사들이 제기하면 훈련도 강하게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군의 존재 목적은 편안함에 있지 않다. 과거에도 힘든 훈련은 얼마든지 존재했고 훈련이 강할수록 전시에 생존확율은 높은 것이다. 또한 군 내부의 분열과 비리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끌어 들여 해결하려 한다면 군은 무력집단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집단이 되기 힘들 것이다. 지휘권 중에서 다수를 살리고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마음 아프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가정하여 운용되는 군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각으로 청원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9]

## 5. 결 론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휴전상태로 전시에 버금가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권이라는 명분아래 군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서 시대적 현상에 맞게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군인에게 기본권도 제한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충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군은 법적으로 군내문제를 외부로 제기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복무규율에는 1차적으로 군내 조치를 건의한 후 처리가 미흡할 경우 외부로 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 군인은 법률적 유효라는 위법한 토대위에 국가존립이라는 생존권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시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다. 강대국의 속국이 되면 비참한 생활을 한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군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과거처럼 지휘권 미명아래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군을 운영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청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도 청원의 내용이 군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론화 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원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청원의 1차 해결 집단부터 규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관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조치를 실행하여 청원인으로 하여금 공신력 있게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공익신고센터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감찰장교가 운영하고 있는 체제에서 군 법무관과 군사경찰로 편제된 감찰기구로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 장교중에서 선발된 감찰장교는 법률적 지식이 깊다고 할 수 없어 법률과 수사기능을 갖춘 부서에서 운용하는 것이 공신력과 청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부청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이는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원의 경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결과를 미흡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군 내부의 일부 문제를 여론몰이로 하여 국민들에게 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청원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청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원인으로 시대가 변화하였는데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청원이 동영상, 사진, 녹취 등 법률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청원을 처리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차후 청원이 쉽게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이 투명하여 결과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군대 청원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경향신문, 2020.6.26.일자 “국민청원 게시판글로 시달리는 군대.
- [2] 경향신문, 2020.4.30일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군대는 곤란하다
- [3] 임태훈,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9-92, 2013.
- [4] 임태훈,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성공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5-136, 2013.
- [5] 오다슬, “국민청원게시판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3-35, 2020.
- [6] 김선희, “국민청원게시판의 특성이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9-12, 2019.
- [7] 이성복, “행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90-198. 2018.
- [8] 최진성,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9-10, 2008.
- [9] 김병록,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26(2) pp140-145, 2019.

## 〔 저 자 소 개 〕



정 재 극(Jung, JaeKeak)  
1990년 학사  
1996년 석사  
2013년 박사  
2011년~20년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입학홍보처장  
20년~ 연성대학교 경찰경호  
보안과 교수/학과장